

분과회 규정

제 1 조 한국전기화학회의 회원은 각 학술분야의 활동을 촉진하고 동호인들의 친목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술분과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 2 조 각 분과회는 다음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(1) 한국전기화학회의 정회원으로 1년 이상 가입하고 그 분과의 분야를 전공한 자 20인 이상의 연명 신청

(2) 신청 당시 이전 1년간 10인 이상이 참석한 세미나 또는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을 2회 이상 개최한 실적

제 3 조 각 분과회의 세칙은 각 분과회에서 작성하되,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4 조 각 분과회는 세칙에 따라 분과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되, 그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되며 2년 단위로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각 분과회는 스스로 회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고 모금이나 기부금은 본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.

제 6 조 각 분과회는 당해년도 12월에 다음해의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을, 그리고 2월에 전년도 회무 및 감사보고서를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